

# 森林作業論(3)



任 慶 彬

〈전호에서 계속〉

⑥ 假施業案編成規程(15)

이규정은 1919년 農商工部長官결재로 되어 있다. 제3장 本業중 몇條를 골라 이곳에 보인다.

『제34조. 作業種은 다음 5種으로 한다.

1. 皆伐喬林作業
2. 前更喬林作業(傘伐作業?)
3. 擇伐喬林作業
4. 矮林作業
5. 中林作業

皆伐喬林作業 及 前更喬林作業의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全伐喬林作業으로 할 수 있다. 前項 각호에 속하지 않는 作業種은 편 이상 이와 유사한 作業種으로 간주하고 取扱할 것임.

제39조. 中林의 上木의 輪伐期는 下木의 그것의 整數倍로 할것.

제40조. 擇伐喬林의 回歸年은 그 輪伐期의 整分으로 할것.

제47조. 主伐에 의한 伐採量은 주로 면적을 표준으로 하고 各施業期의 수입에 큰 차이가 없도록 할것.』

이규정에는 5종의 삼림작업종을 들고 있다. 조문중에 皆伐喬林作業과 前更喬林作業의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全伐喬林作業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한 表現에는 지금의 用語上으로 보아 이해하기 힘든면이 있다. 大面積皆伐作業을 뜻하는것 같다.

제47조에 保續收穫의 뜻이 담겨져 있다.

⑦ 斫伐事業假施行手續(17)

이것은 1921년에 만들어지고 1925년에 개정을 본바 있다. 내용에 國有林事業實施計劃書가 있는데 이때에는 伐採木의 선정 이유 및 跡地更新에 관한 소견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作業實行에 있어서는 청부에 맡길수도 있다고 했다.

내용을 검토해보면 생신을 중요시하는 작업종이 아니라 나무별채를 위주로 한것 같다. 본 시행수속기재란안에 作業種에 대한 것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⑧ 國有森林產物處分報告의 건(18)

이것은 1928년 山林部長이 각영림서장 앞으로 낸 통첩이다. 내용을 보면 國有森林產物處分 보고 양식안에 作業種으로서 擇伐과 皆伐의例外가 있다. 이때 作業種은

更新伐採法을 뜻하고 있다.

이때 擇伐이란 쓸만한 나무를 費用集約意圖아래 모조리 伐採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⑨ 天然更新에 의한 조림장려의 건(19)

이것은 1930년 山林部長演示로 되어 있다. 다음 내용이 있다.

『.....天然更新을 장려하고 보호제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에 와서 과거 20년간의 실적을 살펴볼 때 天然更新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할 뿐만 아니라 收益에 있어서도 볼만한것이 있다. 이후부터는 天然更新方法에 의한 조림장려의 필요가 있고 조림에 요하는 면적이 매우 넓고 民有林의 경영에 있어서도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관철하기가 극히 어렵다. 따라서 民有林에 대한 금후의 일반적 시설방침으로서는 보호제일주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당시 林務主任官들을 모아 놓고 이러한 연시를 한 것인데 내용에 깊은 함축성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과거 20년간이라면 한 일합병 이후부터인데 그간 人工造林의 성과가 신통치 못해서 天然更新에 호소하는 듯한 것을 느낀다. 그리고 보호제일주의라는 것은 그간 숲이 벌채되고 그뒷자리의 처리를 보호에 호소한듯 하다. 이때 대상 수종의 언급이 없다. 천연갱신을 내세운 기술행정상의 조치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 ⑩ 天然更新에 관한 簡易試驗실시의건(20)

이 통첩은 1930년 山林部長이 각 영림서장 앞으로 보낸 것이다. 앞項에서 天然更新의 조림장려가 지적되었는데 그와 때를 같게해서 이 통첩이 나간 것이다. 아직 천

연갱신법의 적용에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 있었음을 말해 준다. 영림서장 앞으로 통첩이 나간것은 국유림경영을 맡고 있는 영림서가 시험수행의 실질적 대상이었다고 판단한 데에서 온 것 같다.

벌채적지의 천연갱신의 간이시험을 수행할 영림서로서 江界, 厚昌, 中江鎮, 惠山鎮은 가문비나무 및 전나무루에 대하여 실시하고 茂山과 北青에서는 낙엽송(이깔나무)林의 시험을 울진에서는 소나무林의 시험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天然更新시험요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 가문비나무, 전나무林(분비나무포함?)은 어떤 直徑級水準이상의 林木을 벌채한다. 이때 벌채방법에 4등급이 있다. 4등급내용은 생략한다.

둘째 : 이깔나무林은 母樹更新法으로 시험하는데 母樹本數別의 처리수준은 다음과 같다. (1) 현행방법에 따라서 (2) 핵터당 30그루 (3) 전그루수의 15%를 모수로 남긴다(4) 갱신상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벌채법으로 한다. 이상 4가지 처리수준이다.

필자의 의견을 이곳에 넣는다면 좋은 시험처리방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객관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다.

셋째 : 소나무林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시험한다. (1) 현행수준 (2) 핵터당 30그루 잔존 (3) 50m폭으로 帶狀皆伐更新, 이때 有木帶上에 있어서는 立木株數의 약半數를 疏伐해 준다. (4)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처리(이것은 각영림서의 기왕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상의 4처리에 병행해서 3 처리수준의 整地方法이 지시되고 있다. 이것은 소나무의 갱신에 있어서는 地表처리가 중요함을 인식한데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간이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가 보고서로 간행된 것 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단 이에 관련된 연구가 함경북도 풍산군에서 이깔나무에 대한 천연갱신의 시험결과가 松岡(1932)에 의해서 보고된 바 있다.(50) 이내용은 본 논설에 있어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이와같은 당시의 천연갱신에 대한 관심과 추천된 森林作業法의 종류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이 쏠리고 지금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만한 여운이 있다.

#### ⑪ 國有林野造林事業內規에 관한 건(21)

이것은 1930년에 山林部長이 각 영림서장 앞으로 보낸 통첩이다. 그중 造林豫定案의 기재방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수종, 작업종에 있어서 皆伐喬林은 皆喬로 擇伐喬林은 擇喬로 前更喬林은 前更으로 全伐喬林은 全伐로 그외의 作業種에 있어서는 中林, 矮林 등으로 기재하고 앞에樹種名을 붙이도록 할 것이다. 단 施業案 편성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雜으로 기입할 것이다.』

당시 어느정도의 기술로서 이러한 作業法이 수행되었는지 또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는 알도리가 없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天然更新하기 위한 天然生育地의 補播植은……』 하는 점은 수긍이 간다. 즉 천연갱신에 호소하더라도 그성과가 여의치 않으면 과종 또는 묘목식재로 그 부족을 돋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타당한 작업기술이다.

#### ⑫ 造林의 合理化의 건(22)

이것은 1932년 農林局長이 道林務主任官

을 모아 놓고 한 演示내용이다. 그主旨는 人工造林을 되도록 하지않기로 하고 天然力を 이용해서 개신하여 成林을 기하라는 것이다.

『되도록 天然下種을 응용하고 그밖의 파종조림, 一年生豆조림 등을 해서 人工을 생략하여 成林시키도록 한다. 지금과 같이 경제계가 부진하고 民力이 피폐한 시국에 있어서는 특히 통절하게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1932년 이미 시국이 어지러운 상태로 접어든 느낌이다. 조림사업에 돈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힘이 피폐한 시국임을 강조하면서 人工造林의 적용의 어려움을 상기시키고 있다. 천연갱신의 기술이 그렇게 당장 도입될 수 있었는 것인지 아마 그기술 수준은 무척 저급한 것 이였을 게다.

#### ⑬ 民有林指導方針大綱制定의 건(23)

이것은 1933년 政務總監이 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통첩으로 되어 있다.

이때까지는 國有林作業에 관한 것이 많았으나 이곳 민유림지도방침대장의 제정은 당시 민유림경영에 대한 일대 기술전환 같은 것이 모색되고 있다. 日帝強占期의 林政의 중대한 방침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소 장황해서 다만 更新技術에 관련된 것만 추려서 제공한다.

天然造林 : 소나무는 천연下種에 의하여 비교적 쉽게 조림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 방법으로 助成하고 다른 수종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천연조림을 응용하여 조림비용을 절약하도록 한다.

播種造林 : 상수리나무류, 신갈나무류는

주로 파종조림에 의하도록 하고 그외의 수종에 있어서도 되도록 파종조림을 응용 할 것.

활엽수증식 : 소나무숲에 混生하는 활엽수의 벌채를 제한하고 또 식재하도록 하고 때로는 파종에 의해서 混淆林으로 유도하며 적지를 골라서 활엽수림을 조성하도록 할 것.

一齊林에 있어서는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을 때에만 皆伐하여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한 간벌을 실시해서 치수 및 지피물의 발생을 촉진하고 때로는 보식을 실시 할것.』

이러한 1933년의 민유림지도방침대강을 보면 역시 시국의 긴박성이 엿보인다. 즉 재정적투입과 인력의 동원에 한계가 오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되도록 인공조림을 지양하고 천연의 힘에 의해서 成林시키라는 내용이 이에 담겨져 있다.

소나무의 天然下種만 하더라도 무척 쉬운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물며 다른 수종의 천연하종에 의한 개신은 더욱 더 어렵다.

참나무류의 파종식재에 의한 조림은 좋은 착안이긴 하다.

활엽수종의 이용가치를 둘우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수긍이 간다. 또 一齊林의 경우 생산지반인 토지적요소가 쉽게 파괴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사전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이 통첩이 나간 것은 1933년 연초인데 그해 말에가서 실시요령에 관한 통첩이 다시 나가고 있다. 다음항에서 그것을 살펴보겠다.

#### (14) 民有林指導方針實施에 관한 건 (24)

이것은 1933년 말에 農林局長이 각 도지사 앞으로 낸 통첩이다. 통첩의 내용은 다음과 3 가지로 요약된다.

1. 인공조림장려계획立案요지
2. 인공조림장려요령
3. 소면적임야소유자에 대한 林木伐採指導要綱

이상중 본논설문에 관련된 것을 추려본다

『현재 未立木地이거나 또는 散生地이지만 천연갱신에 의해서 成林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林地에 있어서는 인공조림을 장려하지 말고…… 수종의 선정은 대체로 針闊混淆林으로 유도할 방침을 세우고……林叢구조상 필요한 適樹混植을 고려하고…… 소나무林의 伐採跡地에 있어서는 되도록 벌채 후 2~3년이 지난뒤 치수의 발생상황을 보고 파종과 식재를 장려하도록 한다.

伐採方式으로서는 用材林에 있어서는 擇伐을 하여도 좋다. 上層林皆伐은 帶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伐採帶의 폭은 20m 이내로 하고 벌채대 상호간의 거리는 帶幅이 상으로 하고 伐採帶의 방향은 가급적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면적이 좁거나 지반상황이 좋지 못해서 帶狀作業이 부적당할 때에는 群狀 또는 點狀作業을 하도록 한다.

上層木伐採장려로서 母樹의 부족을 가져오지 않도록 고려 할 것이다.

이상 좀 장황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민유림에 있어서도 성숙한 나무는 아끼지 말고 끊어 목재자원 충당에 임하고 되도록 개신은 천연력에 의해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나무의 천연하종은 역시 어렵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다.

帶狀, 群狀 등 소면적작업의 지적에 대하여서는 작업적용영역에 탄력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호 계속〉